

국민연금제도 실시방향

보건사회부

1. 국민연금제도실시의 필요성 및 배경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나,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되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평생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제도의 미비로 그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등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비없이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른 젊은계층의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노인중 80%이상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단지 2%정도만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80%의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6년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84년현재 8.6배, 산업재해는 12배나 더 늘어 났습니다.
- 현행 퇴직금제도 역시 전퇴직자의 97.6%가 50세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을뿐 아니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등에 충당되므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이 못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존되어야 하는 바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의 부담능력이 제고되었고 80년대 이후의 물가의 안정으로 장기적 연금제도의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베비붐」세대가 '82년

중반이후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 계층의 연금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제도의 도입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2.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0인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점차 확대 실시하게되며, 농·어민,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 나.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는 크게 4종류로 구분됩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5~20년 이상이고 55~60세에 달할때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급여수준은 최종보수의 40% 정도임.
 - 장애연금 : 가입기간중에 발생하는 질병, 부상으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때 지급받는 연금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이 지급받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가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본인각출료에 재형저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
- 다.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각종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일정율의 각출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국민의 부담능력과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각출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92년까지는 근로자 월보수의 3%를 노사가 각각 1.5%씩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라. 국민연금기금의 설치·운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출료 및 이식금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기금은 장래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가 필수적인바, 시행령에서도 그 운용수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하여 운용이율은 1년만기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대표 및 기타 공익단체대표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제도의 관리운영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관리유지, 각출료징수 및 연금급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통제가 가능하고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공단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88.1.1부터 실시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반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 제도를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에 적극 협조하시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루도록 합시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지난 '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까지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석유과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연평균 16%씩 상승하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실시시기를 연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적 부담능력이 향상되었고 물가도 안정됨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86.9.1일 발표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국민연금제도를 '88.1.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85년 현재 1인당 GNP가 2천불 이상인 세계 40개 국가중 노후생계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도입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3. 연금제도실시의 필요성

가.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1)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고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87년 현재 전인구의 6.8%에서 2000년에는 10.0%, 2040년에는 25.0%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 한편 '83년 현재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의 노후실태를 보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젊은 계층의 노인 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뿐만 아니라 공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과정에서 사망,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각종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약 20년 동안에 8.6배나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율은 12배에 달하고 있어 사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수혜인구는 '84년 현재 전체취업자의 5.6%에 불과합니다. 또한 '53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 16인이상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생계보장에 어느정도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 노후생계보장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전체퇴직자의 97.6%가 50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60세

이상 퇴직자의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 (2) 현행제도는 퇴직금이 일시금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금의 대부분이 자녀교육, 결혼비용, 주택구입 등에 충당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기업의 연륜이 길어짐에 따라 누적퇴직금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급보장제도의 미비로 기업도산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큼니다.
- (4) 사망, 장애발생시 배우자, 유자녀, 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장기능이 없습니다.

4.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존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됩니다.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으로 나누어 적용해 나가되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표 1>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천명)

구 분	1970	1986	2000	2040
인구(A)	31,435	41,569	48,017	49,925
60세이상인구(B)	1,704	2,824	4,781	13,256
B / A	5.4	6.8	10.0	25.0
피부양율 ¹⁾	9.7	9.3	6.7	2.2

주: 1) 피부양율=15-59세인구 / 60세이상인구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추계자료 각년도

<표 2>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추이

구 분	1966	1980	1984
산업재해사고인원(명)	13,024	113,375	159,306
재 해	100	871	1,223
교통사고사고인원(명)	20,733	117,249	177,845
지 수	100	566	858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연보, 각년도, 교통부 교통통계연감, 각년도

사용자 그리고 1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됩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외의 자로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국민연금제의 조기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2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에 달하더라도 연금수급요건인 20년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급여산정방식과 구성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급여는 사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연금급여와는 달리 소득계층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법정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개인의 소득수준, 가입기간 그리고 전체가입자의 평균보수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3>의 산정식은 그 계산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균등부분은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평균보수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이 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년마다

<표 3>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2.4(A+B) \times (1+0.05n)$$

- ◇ 2.4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에 대한 기준치
- ◇ A(균등부분) :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액
- ◇ B(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 n : 가입기간 20년 초과연수

연금액이 가산되도록 하여 장기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적인 성격으로 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는 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내에 한정되며, 부모는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분류되는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및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4종류로 세분됩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보면 다음<표4>와 같습니다.

5.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제급여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률의 각출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제급여를 위해서는 각출료수준이 보수월액의 10%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표 4>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노령 연금	기본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직 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100% +가급연금 (최종보수의 40%수준)
	감액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이고 60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72.5% ~92.5%+가급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50% ~90%
	조기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55세이상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때	기본연금액의 75% ~95%+가급연금
장 해 연 금		본 인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기본연금액의 60 ~100%+가급연금
유 족 연 금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유족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가입자 이던 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 ~60%+가급연금
반 환 일 시 금		본인 또는 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격 상실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할 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사용자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에 각각 일정이자율 적용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이지만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각출료부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는 노·사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각출료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현행퇴직금준비금에서 일부를 각출료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노·사의 신규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연차별 각출료 조정계획을 보면 <표5>와 같습니다.

<표5> 연차별 각출료 계획

(표준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대비)

구 분	'88~'92	'93~'97	'98이후
계	3.0%	6.0%	9.0%
사업장 근로자	1.5%	2.0%	3.0%
가입자 사용자	1.5%	2.0%	3.0%
퇴직금 준비금	—	2.0%	3.0%
지역가입자·임의 계속가입자	3.0%	6.0%	9.0%

6. 국민연금기금의 설치·운영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에 납입하는 각출료를 계속 적립하여 발생하는 적립금과 이익금을 기금으로 하여 급여사유발생시 급여를 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실시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상당한 적립금이 쌓이게 되므로 이를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기금은 장래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가 필수적인바 법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그 운용수익은 최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 운용수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정부 및 연금수급권자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 및 결과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용결과에 대하여는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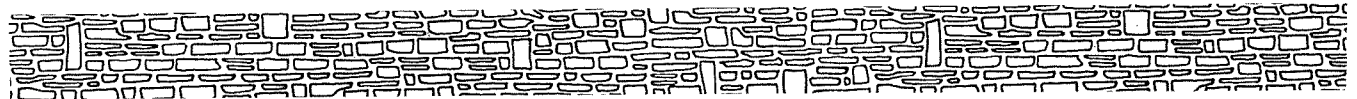
7. 제도의 관리운영

국민연금제도가 효율적이고도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어떤 행태로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을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유지 관리하고 각출료의 징수 및 연금급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은 연금업무의 집행조직으로서 국가 위탁관리 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8. 맺는말

오랜동안의 참음과 진통끝에 이제 국민연금제도라고 하는 아기는 막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탄생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한 획을 긋게 됨은 물론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에 한발 성큼 다가서게 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모처럼 출범하는 제도에 조금의 차질도 없게 하기 위하여 관계제법령의 완비, 관리기구의 설립 및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등 제반준비작업에 완벽을 기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말은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국민연금국 제공)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